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신고자가 해당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(안 제96조의2).
- 법원의 ‘공정거래위원회’에 대한 기록송부요구권을 ‘자료제출명령권’으로 강화하면서 영업비밀 등 자료제출 제외 대상을 명시하되, 법원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등도 일정 보호장치 하에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0조 등).
- 법원이 ‘당사자’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소송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체로 확대하고, 제출명령 대상자료에 ‘위반행위 증명’을 위한 자료를 추가함(안 제111조).

II. 검토의견

1. 비밀유지명령 신청권자 한정(안 제112조)

현행 제112조¹⁾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는 그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법원이 다른 당사자 등에게 비밀유지를 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. 개정안은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권자를 당사자 외에 ‘이해관계인’까지로 넓히면서,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다만, 당사자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‘이해관계인’까지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i) ‘이해관계인’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, ii)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

1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조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,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
2.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“비밀유지명령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
2.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
3.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

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3자가 당사자참가, 보조참가 등 참가 절차를 통해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채 소송상 신청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, iii)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법원행정처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‘이해관계인’이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유사 입법례로, 2026년 2월 신설되어 2028년 2월 시행예정인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8²⁾ 또한 ‘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’의 경우에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안 제112조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의 신청권자를 ‘당사자 또는

2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8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2. (생략)

②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“비밀유지명령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[본조신설 2026. 2. 19.]

[시행일: 2028. 2. 20.] 제40조의8

공정거래위원회'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.

[수정의견]

[illegible]

1. · 2. (생략)	1. · 2. (개정안과 같음)
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“비밀유지명령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공정거래위원회</u> 는 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개정안과 같음)

2. 부칙의 ‘경과조치’를 ‘적용례’로 명확히 정비(안 부칙 제3조)

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“신고를 받고” “처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” 사건은 안 제96조의2의 개정규정³⁾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.

다만, 경과조치를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에 ‘신고’만 있으면 되는지, ‘신고’와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‘결정’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.⁴⁾ 이보다는 이 법 시행 이후 ‘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’ 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‘적용례’로 규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간명한 측면이 있다고 봄.

3) 안 제96조의2(신고인의 이의신청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의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이의신청 심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이의신청의 대상, 이의신청의 절차,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예를 들어,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는 받았으나 이 법 시행 후에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 신·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함.

따라서 안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명확히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	부 칙
제2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제3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----- 제112조까지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신고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	제2조(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